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25일, 한창민의원 등 2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9.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5.9.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창민의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입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실태 파악이나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현행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011년 법 제정 이후 3년마다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4차례 실시되었음. 실태조사의 내용은 주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지급실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등이었고, 이용자로부터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있었으나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및 클라이언트의 폭력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사회복지사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사 수의 증가 추세 및 폭력 피해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폭력 피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등에 관하여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폭력 피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파악하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폭력 예방 및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폭력 피해 실태의 경우 일반적인 근무실태 조사와 달리 폭력 피해 사례가 일정한 유형·분류로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고, 피해 당사자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사·공표의 주기에 대하여 박용갑의원안은 2년으로, 한창민의원안은 3년(현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공표의 내용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기존 실태조사의 시기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실태조사를 1년만에 다시 시행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의 최초 시행 연도를 부칙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